



##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08. 8. 8.] [규칙 제3602호, 2008. 7. 7., 전부개정]

부산광역시(노인복지과), 051-888-326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용허가의 신청 등)** ① 「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(기간연장)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(기간연장)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화장장 및 장례식장의 연습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(기간연장)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유골의 인도 신청)** 조례 제3조제9항 및 제8조 단서에 따라 봉안된 유골이나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넘겨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유골처리장의 사용 신청)**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 본문에 따라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유골을 뿌리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처리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사용료등의 납부)** 조례 제5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등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「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른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용료등의 반환)**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신청서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,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장사시설의 관리)**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추첨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부 칙**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규칙의 폐지)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- ③(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 (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<2005. 2. 1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 <2007. 12. 26>

이 규칙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제1조**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**(다른 규칙의 개정)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.
- 제3조**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,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